



국민의 나라 절의로운 대한민국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다 나은 정보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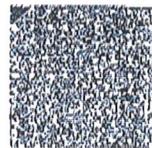
제목 파태료 처분 보고(알림)[(주)한국비오스제약]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한국비오스제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태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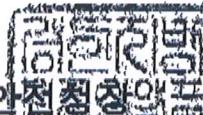
업체명(업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한국비오스제약 (의약외품 제조업)	설영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 파크쌍용3차 102동 606호	○ 「약사법」 제38 조제2항 위반 - 2017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파태료 100만원 (납부기한: '19.6.20.)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서 1부. 끝.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처 치 자	Officer	처 치 자	Officer
국	국	국	국
자	자	자	자
한	한	한	한
호	호	호	호
부 치 자	Officer	부 치 자	Officer
국	국	국	국
자	자	자	자
한	한	한	한
호	호	호	호
부 치 자	Officer	부 치 자	Officer
국	국	국	국
자	자	자	자
한	한	한	한
호	호	호	호
부 치 자	Officer	부 치 자	Officer
국	국	국	국
자	자	자	자
한	한	한	한
호	호	호	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부처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외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사범 중앙조사단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서울제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실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한국체육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소비자원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접수일 2019. 5. 20.

주무관	김승경	사무관	최경식	운영지원과장
-----	-----	-----	-----	--------

협조자 주무관 이소영

시행 문영지원파-7272 (2019. 5. 20.) 접수

주 13809 경기도 파주시 관문로 4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동암동) /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2-2110-8019 팩스번호 02-2110-0801 / ksk0534@korea.kr / 비공개(5,7)

일자리가 설장이고 복지입니다.

## 과태료부과처분서

### 1. 업체현황

- 업체명 : (주)한국비オス제약 (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상용3차  
102동 606호
- 대표자 : 설영환

###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19. 6. 20.까지)

### 3. 처분사유

- 2017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목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판찰 법원에 통보  
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5. 2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